

검 토 보 고

파주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 제안이유

- 일반 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과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주기 위한 파주시 장애인 재활 자립작업장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장애인 재활자립 작업장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 주요골자

- 작업장은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108-64번지에 두도록 함.
(안제2조)
- 작업장의 운영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장애인 복지와 관련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공익법인, 장애인 관련 단체 등에 위탁 운영토록 함.(안제4조 제1항)
- 작업장을 수탁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에서 수탁운영자를 지정함.(안제4조 2항)
-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계약갱신에 의하여 계속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안제4조 3항)
- 고용대상 장애인은 파주시에 등록된 장애인으로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자로 하고 비장애인 채용은 전체고용인원의 10분의 1범위내에서 생산공정상 필요에 따라 수탁자가 판단하여 채용하도록 함.(안제5조 제1항)

□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장애인 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일반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과 자립기반을 조성해 주기 위하여 1999년 1월 21일 파주시 금촌동 108-64번지에 연면적 527.62평방미터의 장애인 재활 자립작업장을 준공하고 장애인 재활 자립작업장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동 작업장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제정하려는 조례안임.
- 동 조례안은 작업장의 운영을 위하여 업종, 운영의 위탁, 고용대상 장애인, 수익금의 사용, 수탁자의 의무, 승인, 보고, 감독, 위탁의 취소등 작업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비교적 충실하게 작성되었다고 보여짐.
- 그러나 안제4조(운영의 위탁)에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는 동 조례안의 내용중 직영시 운영에 관한 사항이 전무하고 또한 동 조례안은 장애인들에게 일자리 제공과 자활의욕을 고취하고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장애인들의 사정을 잘알고 있는 장애인 복지와 관련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공익법인, 장애인관련 단체 등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으로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라는 용어는 동 조례안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